

##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24년)

### 1. 계약목적

- ① 센터와 이용자(보호자)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지역사회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에 있다
- ③ 수급자(보호자)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### 2. 서비스 이용계약

-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,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가.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

나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
다.기타 필요한 서류

- ②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시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.

### 3. 계약기간

- ① 상호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(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).
-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의 기간을 우선으로 한다.
- ③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(보호자)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계약서로 갈음할수 있다

### 4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되 방문요양, 방문목욕은 총급여비용 중 15%(일반), 9%(감경) 6%(감경), 0%(기초)를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
-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

다.

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### 2024년 방문요양등급 및 월한도액

(단위: 원)

| 구분     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<br>등급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'23년<br>한도액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   |
| '24년<br>한도액 | 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   |
| 인상률         | 9.81%     | 10.63%    | 2.72%     | 2.73%     | 2.72%     | 3.06%      |

\*1.2등급 - 8시간 서비스이용 가능횟수 월 8회

###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1.1)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(단위: 원)

| 방문당 시간 | '23년<br>수가 | '23년<br>본인부담 | '24년<br>수가 | '24년<br>본인부담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30분    | 16,190     | 2,429        | 16,630     | 2,495        |
| 60분    | 23,480     | 3,522        | 24,120     | 3,618        |
| 90분    | 31,650     | 4,748        | 32,510     | 4,877        |
| 120분   | 40,280     | 6,042        | 41,380     | 6,207        |
| 150분   | 46,970     | 7,046        | 48,250     | 7,238        |
| 180분   | 52,880     | 7,932        | 54,320     | 8,148        |
| 210분   | 58,930     | 8,840        | 60,530     | 9,080        |
| 240분   | 65,000     | 9,750        | 66,770     | 10,016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가급여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%(40%경감) |
|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                     | 6%(60%경감) |
|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<br>고시 해당자) |           |

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-2인이상 60분미만 주1회

| 구분         | '23년<br>수가 | '23년<br>본인부담 | '24년<br>수가 | '24년<br>본인부담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차량이용(차량 내) | 82,160     | 12,324       | 84,670     | 12,701       |
| 차량이용(가정 내) | 74,070     | 11,111       | 76,340     | 11,451       |
| 차량 미 이용    | 46,250     | 6,938        | 47,670     | 7,151        |

## 5. 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

### 1). 서비스이용자의 의무

- ① 안전하고 **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**(단병원 입원 시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수급자 신체 청결 및 주변환경 청결의무
- ⑤ 기타 “갑”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

### 2). 이용자(보호자)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
- ③ 표준수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
- ④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
- ⑤ 이용자(입소자)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⑦ 이용자 병원 외래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지불 및 책임의무
- ⑧ **급여행위 외 요구금지(2020.01.01. 신설)(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조2항)**

## 6. 이용자의 권리

-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.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.
-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.
-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.
- ⑦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.
-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.

## 7.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- 1). 신원인수 방법 :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
## 2).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
- ②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③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.
- ⑤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.
- ⑥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
- ⑦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수 있다
- ⑧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
- ⑨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
- ⑩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

## 3).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등이 어려울때는 수급자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전,후 요양요원과 인수.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
- ⑧ 기타 서비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 8. 인수.인계절차

직원의 퇴직,휴가 또는 근무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최소한 5일전까지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인수. 인계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

## 9. 계약해제

계약기간 만료 및 수급자(보호자)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(사망) 서비스가 종결되며, 이용료(본인부담금)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<한국치료활동복지센터>